

A

04-23-2003

ORM COVER SHEET *Patents Only*To the Honorable Co  
Please record the att

102428707

Attorney Dkt. No.: 038779/199030

1. Name of conveying party(ies):

Samsung Chemical Paint Co., Ltd.  
Seonggok-dong 629-3, Ansan-city  
Kyungki-do, KOREAAdditional name(s) of conveying party(ies) attached? Yes ☐ No ☒

2.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party(ies):

SSCP CO., LTD.  
Seonggok-dong 629-3, Ansan-city  
Kyungki-do, KOREA

4-21-03

3. Nature of conveyance:

- ☐ Assignment  
☐ Merger  
☐ Security Agreement  
☒ Change of Name  
☐ Other \_\_\_\_\_

Execution Date: December 9, 2002

Additional name(s) & address(es) attached? Yes ☐ No ☒

4. Application No.

Patent No. 6,436,469

If this document is being filed together with a new application, the execution date of the application is:

Additional numbers attached? Yes ☐ No ☒

5. Name and address of party to whom correspondence concerning document should be mailed:

ALSTON & BIRD LLP  
Bank of America Plaza  
101 South Tryon Street, Suite 4000  
Charlotte, NC 28280-4000

6.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and patents involved:

One (1)

7. Total fee (37 CFR 3.41) \$40.00



Enclosed



Authorized to be charged to deposit account

8. Deposit account number: 16-0605

DO NOT USE THIS SPACE

9. Statement and signatur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foregoing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any attached copy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Date: April 15, 2003

Name of Person Signing Andrew T. Spence,  
Reg. No. 45,699

Total number of pages including cover sheet, attachments and document: Eleven (11)

OFFICE OF PUBLIC RECORDS  
2003 APR 21 AM 3:45  
FINANCE SECTIONC:\T014\86733v1  
4/22/2003 LNUELLER 00000019 6436469

C:\FD\8001

40.00 DP

PATENT  
REEL: 013974 FRAME: 0202



**March 7, 2003**

**SHIN, In-Soo**

**Registry Officer  
Commercial Registration Section,  
Seoul District Court**

**(Official Seal Affixed)**

|      |                |
|------|----------------|
| 등기번호 | 002829         |
| 등록번호 | 134111-0011928 |

# 등기부 등본 ( 말소사항 포함 )

|     |                   |               |
|-----|-------------------|---------------|
| 상 호 | 삼성화학페인트 주식회사      | . . 변경        |
|     |                   | . . 등기        |
|     |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       | 2003.02.12 변경 |
|     |                   | 2003.02.15 등기 |
| 코 점 | 안산시 성곡동 629-3     | . . 변경        |
|     |                   | . . 등기        |
|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9-3 | 2002.12.09 변경 |
|     |                   | 2002.12.09 등기 |

|      |                              |        |
|------|------------------------------|--------|
| 공고방법 |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변경 |
|      |                              | . . 등기 |

|       |           |               |
|-------|-----------|---------------|
| 주의 금액 | 금 5,000 원 | . . 변경        |
|       |           | . . 등기        |
|       | 금 500 원   | 2002.05.30 변경 |
|       |           | 2002.06.10 등기 |

|            |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 주   | 2001.07.10 변경 |
|            |               | 2001.07.10 등기 |
|            | 50,000,000 주  | 2002.03.30 변경 |
|            |               | 2002.04.13 등기 |
|            | 500,000,000 주 | 2002.05.30 변경 |
|            |               | 2002.06.10 등기 |
|            | 50,000,000 주  | 2002.12.04 경정 |
|            |               | 2002.12.13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와<br>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            | 변경연월일<br>등기연월일                   |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310,000 주   | 금 1,550,000,000 원 | 2001.07.11 변경<br>2001.07.11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3,100,000 주 | 금 1,550,000,000 원 | 2002.05.30 변경<br>2002.06.10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6,200,000 주 | 금 3,100,000,000 원 | 2002.12.09 변경<br>2002.12.13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7,006,000 주 | 금 3,503,000,000 원 | 2002.12.27 변경<br>2002.12.13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br>보통주식 7,006,000 주 | 금 3,503,000,000 원 | 2002.12.27 착오발견<br>2002.12.27 등기 |

| 목                          | 적              |                |  |  |
|----------------------------|----------------|----------------|--|--|
| 1. 특수 페인트 및 특수잉크 인쇄 제조 판매업 | <2002.03.30 삭제 | . . 등기>        |  |  |
| 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2002.03.30 삭제 | . . 등기>        |  |  |
| 1. 페인트 및 잉크의 제조 및 판매업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
|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 2. 합성수지의 제도가공 및 판매업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

\* 음영이 포함되어 기재된 사항은 말소된 등기사항입니다.

|                                          |                |                |
|------------------------------------------|----------------|----------------|
| 3. 임대 및 보관업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4. 광섬유, 광케이블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5. 부동산업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6. 건설업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7. 전 각호의 사업에 관한 물품의 매매 및 수출입업, 도산매업, 대리업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8. 전 각호에 부수되는 무역 및 일절사업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9.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                  | <2003.02.25 삭제 | 2003.02.27 등기> |
|                                          | <2002.03.30 변경 | 2002.04.13 등기> |
| 1. 특수코팅제 및 특수잉크의 제조 및 판매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2. 합성수지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3. 펄리싱레터의 제조 및 판매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4. 아이티신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5. 광섬유, 광케이블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6. 기타 화학제품 제조판매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7. 임대 및 보관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8. 부동산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9. 건설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10. 전 각호의 사업에 관한 물품의 매매 및 수출입업, 도산매업 대리업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11.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                 | <2003.02.25 변경 | 2003.02.27 등기> |
|                                          | <2003.02.25 삭제 | 2003.02.28 경정> |
| 1. 전 각호에 부수되는 무역 및 일절사업                  | <2003.02.25 변경 | 2003.02.28 경정> |
| 11.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                 | <2003.02.25 변경 | 2003.02.28 경정> |

임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이사 정대식 431205-1***** |    |                  |    |  |  |
| 1999 년 03 월 27 일     | 중임 | 1999 년 03 월 27 일 | 등기 |  |  |
| 2002 년 03 월 27 일     | 퇴임 | 2002 년 04 월 13 일 | 등기 |  |  |
| 감사 이정우 450225-1***** |    |                  |    |  |  |
| 2000 년 03 월 19 일     | 중임 | 2000 년 03 월 20 일 | 등기 |  |  |
| 2002 년 03 월 27 일     | 사임 | 2002 년 04 월 13 일 | 등기 |  |  |
| 이사 김영수 550605-1***** |    |                  |    |  |  |
| 2001 년 03 월 16 일     | 취임 | 2001 년 03 월 30 일 | 등기 |  |  |
| 이사 오주언 380810-1***** |    |                  |    |  |  |
| 2001 년 03 월 16 일     | 취임 | 2001 년 03 월 30 일 | 등기 |  |  |

\* 운영이 포함되어 기재된 사항은 말소된 등기사항입니다.

|                                                                 |                     |
|-----------------------------------------------------------------|---------------------|
| 등기번호                                                            | 002829              |
| 대표이사 오주언 380810-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5, 1395-1, 2 현대맨션 6동 104호 |                     |
| 2001 년 03 월 16 일 취임                                             | 2001 년 03 월 30 일 등기 |
| 대표이사 오주언 38081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1-43 4층 401호                  |                     |
| 2002 년 06 월 20 일 주소변경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이사 정대식 431205-1*****                                            |                     |
| 2002 년 03 월 30 일 취임                                             | 2002 년 04 월 13 일 등기 |
| 2002 년 10 월 01 일 사임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감사 박몽규 581020-1*****                                            |                     |
| 2002 년 03 월 30 일 취임                                             | 2002 년 04 월 13 일 등기 |
| 2002 년 10 월 01 일 사임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사외감사 김덕철 631004-1*****                                          |                     |
| 2002 년 03 월 30 일 취임                                             | 2002 년 04 월 13 일 등기 |
| 2002 년 10 월 01 일 사임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이사 오정현 710813-1*****                                            |                     |
| 2002 년 10 월 01 일 취임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이사 여용동 610412-1*****                                            |                     |
| 2002 년 10 월 01 일 취임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이사 김덕철 631004-1*****                                            |                     |
| 2002 년 10 월 01 일 취임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대표이사 오정현 710813-1***** 서울 서초구 방배동 1-43, 4층 401호                 |                     |
| 2002 년 10 월 01 일 취임                                             | 2002 년 10 월 14 일 등기 |
| 대표이사 오정현 710813-1*****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03-7 동부스타빌라 403호            |                     |
| 2002 년 12 월 12 일 주소변경                                           | 2003 년 01 월 20 일 등기 |

#### 기 타 사 항

1.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195번지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를 합병  
2000 년 01 월 04 일 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충근예탁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3 년 01 월 23 일 설치 2003 년 01 월 30 일 등기

#### 지점에 관한 사항

- 인산시 목내동 403-2  
1995 년 07 월 10 일 설치 1995 년 08 월 10 일 등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3-2  
2002 년 12 월 28 일 변경 2002 년 12 월 28 일 등기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195번지 (김해공장)  
2000 년 01 월 03 일 설치 2000 년 01 월 04 일 등기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본산준공업지구 14블럭 1롯트(진영공장)  
2003 년 02 월 19 일 설치 2003 년 02 월 26 일 등기

####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최임석 610305-1\*\*\*\*\*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주공4단지 402-407

\* \*영이 포함되어 기재된 사항은 말소된 등기사항입니다.

20000220291278023000310104217301B1E8C1F6BEF020 10 1200 1발행일:2003/03/07

PATENT - 3/7 -  
REEL: 013974 FRAME: 0207

지배인을 둔 장소 안산시 성곡동 629-3호

2001 년 03 월 16 일 변경 2001 년 03 월 30 일 등기

2002 년 02 월 19 일 해임 2002 년 03 월 05 일 등기

전 환 사 채(말소된 등기사항임)

제1회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 금 900,000,000원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 1종 (금 100,000,000원, 9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 : 금 900,000,000원 권면금액의 100%
4.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청구에 의하여 다음 전환 조건에 따라 당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둘 이사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주식수로 전환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일 주당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전환가격 : 1주당 200,000원

다.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전환가격})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발행 주식의 발행가액을 0원으로 보고 "다.1)"의 조정후 전환가격을 정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본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 금 5,000원) 총 4,500 주로한다. (각 사채의 권면금액 1억원권당 500주)

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만 기상환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2001년 7월 24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1 년 07 월 28 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 회 전환사채 2002년 12월 30일 전부상환

2002 년 12 월 31 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본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본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이 영이 포함되어 기재된 사항은 말소된 등기사항입니다.

2000 0220291278023000310104217301B1E8C1F6BEF020 10 1200 1발행일:2003/03/07

PATENT

- 4/7 -

REEL: 013974 FRAME: 0208

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본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외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을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주식의 시가

나. 해당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9 제3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

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등기번호

0028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년 월 일 변경 2003 년 02 월 27 일 동기 >

1.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본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본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본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을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주식의 시가

다. 해당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 운영이 포함되어 기재된 사항은 말소된 등기사항입니다.

20000220291278023000310104217301B1E8C1F6BEF020 10 1200 1발행일:2003/03/07

- 6/7 -

20000220291278023000310104217301B1E8C1F6BEF020 10 1200 1발행일:2003/03/07

PATENT - 7/7 -

REEL: 013974 FRAME: 0210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9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9 제3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주식의 소각

1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금에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03 년 02 월 28 일 착오발견 2003 년 02 월 28 일 경정 >

회사성립연월일

1985 년 07 월 31 일

등기용지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이기

2001 년 10 월 26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수수료 1,200원 영수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등기부 등본입니다. {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

서기 2003년 03월 0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등기관 신인수

# CERTIFICATE OF TRANSLATION

As a below named translator, I hereby declare that my residence and citizenship are as stated below next to my name and I hereby certify that I am conversant with both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e document enclosed herewith is a true English translation of the Certificated of Incorporation Registration with respect to SAMSUNG CHEMICAL PAINT CO., LTD.

NAME OF THE TRANSLATOR: LEE, Hye-Sook

SIGNATURE: *Leehyesook*

DATE: April 9, 2003

RESIDENCE: Teheran Bldg., 825-33 Yoksam-dong, Kangnam-ku, Seoul 135-080,  
Korea

CITIZENSHIP: REPUBLIC OF KOREA